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해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400

발의연월일: 2024. 12. 11.

발 의 자: 박해철 · 임미애 · 김정호

이광희 · 송옥주 · 김태선

박 정・전재수・전용기

김남희 • 진성준 • 박홍배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근로기준법」은 "근로"를 "정신노동과 육체노동을 말한다"고 정의하면서도,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에 따른 노동관계 법령에서도 "근로"와 "노동"이 혼용되고 있음.

일제 강점기부터 사용되어 온 "근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 전에 따르면 부지런히 일한다는 의미로 그 이면에는 국가의 노동 통 제적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용어임. 반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 요한 물자를 얻기 위하여 육체적 노력이나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 위라는 의미의 가치중립적인 용어이므로, 법률에서는 되도록 보편적・ 가치중립적인 용어인 "노동"으로 통일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임.

이에 현행법의 제명을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노동복지기본법」

으로 변경하고,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안 제명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해철의원이 대표발의한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 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3호), 「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0호), 「근로기준법 일 부개정법률안 | (의안번호 제6392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 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4호), 「근로자퇴직급여보장 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396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405호),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7호), 「주한미군 소속 한국인 근로자의 지원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안」(의안번호 제6391호),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8호),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6395호)의 의결을 전제 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1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를"을 "노동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제3호·제4호 및 제5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 로 한다.

제3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제1항 중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를 "노동복지(임금·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로, "근로의욕"을 "노동의욕"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 기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노동자, 기간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노동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로,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기근속근로자"를 "노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속는로자"로 한다.

제4조 중 "근로복지정책"을 각각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는 근로의욕"을 "노동자는 노동의욕"으로,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

제6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

제7조제1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근로복지증진"을 "노동복지증진"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소득자용"을 "노동소득자용"으로 한다.

제11조의 제목·제목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 각 "노동복지사업"으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3조 중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우리사 주제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를 "노동복지시 설 및 노동복지진흥기금의 설치·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노동복지 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노동자"로 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정책"을 "노동복지정책"으로,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

제2장의 제목 "공공근로복지"를 "공공노동복지"로 한다.

제2장제1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공급제도"를 "노동자주택공급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각각 "노동자주택"으로 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자주택"을 "노동자주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주택" 택자금"을 "노동자주택자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장제2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0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1조의 제목 "(근로자우대저축)"을 "(노동자우대저축)"으로 하고, 같

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장제3절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2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재해근로자"를 "재해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후단·같은 조 제2항제2호·제3호 및 제7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3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4조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25조제3호 및 제4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7조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2장제4절의 제목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28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29조의 제목·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30조 중 "근로복지시설"을 각각 "노동복지시설"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3장의 제목 "기업근로복지"를 "기업노동복지"로 한다.

제32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3조제1항 전단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지"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근로기간 및 근로관계"를 "노동기간 및 노동관계"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36조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7조제1항제4호 본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4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3장제2절의 제목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 로 한다.

제50조의 제목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 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51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근로관계"를 "노동관계"로, "근로조건"을 "노동조건"으로 한다.

제52조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사내노동복지기금법인" 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사내노동 복지기금협의회"로 한다.

제55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56조제1항제1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복지제도"를 "노동복지제도"로 한다.

제58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0조제3항 중 "근로한"을 "노동한"으로 한다.

제61조의 제목 및 제1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6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하며, 같은 항 제

6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6호의2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파견근로자"를 "파견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63조의 제목·각 호 외의 부분·제4호 및 제5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64조의 제목·제1항 본문·제3항 및 제4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66조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68조제1항 중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70조제4호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71조제1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제3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자별"을 "노동자별"로. "근로자별로"를 "노동자별로"로 한다.

제75조제3항제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78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

제3장제3절의 제목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

제81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2조제1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

제83조의 제목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근로 자지원프로그램"을 각각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

제84조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5조 전단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을 "「노동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86조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한다. 제3장제4절의 제목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86조의2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각각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86조의3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각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

제86조의4의 제목 및 제1항 중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를 각각 "공 동노동복지기금협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및 후단 중 "근로 자"를 각각 "노동자"로 한다.

제86조의5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86조의6제1항 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 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사내근로복지기 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

제86조의8제3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86조의15 후단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을 "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으로 한다.

제4장의 제목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87조의 제목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88조의 제목 및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제10호 및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89조의 제목 및 제목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0조의 제목·제1항·제2항 및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제91조의 제목 및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중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를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로 하며, 같은 조 제8호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근로자지원프로그램"을 "노동자지원프로그램"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근로자"를 "노동부지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및 제16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각각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17호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2조제1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 다.

제9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하며, 같 은 항 제2호 중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94조제2항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

제95조의2의 제목 중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특수형태노동종사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근로자"를 각각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근로복지사업"을 각각 "노동복지사업"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사업"을 "노동복지사업"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제97조제3호 중 "근로복지제도 또는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제도 또는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제99조제2항 중 "근로복지"를 "노동복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금융지주회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2제1항제3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② 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다목2)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주택공급제도"를 "노동자주택공급제도"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③ 농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각각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④ 법인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의2다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자"를 "노동자"로 한다.

⑤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3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근로복지진흥기금"을 "노동복지진흥기금"으로 한다.

⑥ 부도공공건설임대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을 "사내노동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

⑦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 중 "「근로자복지기본법」"을 "「노동자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⑧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노동복지기본법」

- ⑨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제7조의3제5항제2호다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 본법」"으로, "근로복지시설"을 "노동복지시설"로 한다.
- 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5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46조제4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한다.

①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의 제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으로 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1항제3호 본문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각각 "「노동복지기본법」"으로,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를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을 "사내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공동근로복지기금"을 "공동노동복지기금"으로 한다.

제12조의4제2항제3호나목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88조의4제1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후단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

③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의 제목 중 "근로자"를 "노동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근로복지기본법」"을 "「노동복지기본법」"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령을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근로복지기본법」 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근로복지기본법</u>	노동복지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u>근로복지정</u>	제1조(목적) <u>노동복지정</u>
<u>책</u> 의 수립 및 복지사업의 수행	<u> 책</u>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u>근로자</u> 의 삶의 질을 향상시	<u>노동자</u>
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제2조(정의)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u>근로자</u> "란 직업의 종류와	1 <u>노동자</u>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	
업이나 사업장에 <u>근로를</u> 제공	<u>노동을</u>
하는 사람을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	2
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u>근</u>	<u>7</u>
<u>로자</u> 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u>동자</u>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를 말한다.	
3. "주택사업자"란 <u>근로자</u> 에게	3 <u>노동자</u>
분양 또는 임대하는 것을 목	
적으로 주택을 건설하거나 구	
입하는 자를 말한다.	

- 4. "우리사주조합"이란 주식회 사의 소속 <u>근로자</u>가 그 주식 회사의 주식을 취득·관리하 기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추어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 5. "우리사주"란 주식회사의 소속 <u>근로자</u> 등이 그 주식회사에 설립된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그 주식회사의 주식을 말한다.

제3조(근로복지정책의 기본원칙)

- ① 근로복지(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의 참여기회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질 향상을 목적으로 하여야 한다.
 - ② <u>근로복지정책</u>을 수립·시행할 때에는 <u>근로자</u>가 성별, 나이, 신체적 조건, 고용형태,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아니하도록 배려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이 법에 따른 근로자의 복

4 <u>노동자</u>
5노동자
<u> </u>
 제3조(<u>노동복지정책</u> 의 기본원칙)
① 노동복지(임금・노동시간
등 기본적인 노동조건은 제외
한다. 이하 같다)정책은 노동자
<u>노동의욕</u>
 ② <u>노동복지정책</u>
<u>노동자</u>
 ③노돗자

지향상을 위한 지원을 할 때에 는 중소·영세기업 근로자, 기 간제근로자(「기간제 및 단시 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 제근로자를 말한다), 단시간근 로자(「근로기준법」 제2조제1 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를 말한다), 파견근로자(「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 를 말한다. 이하 같다), 하수급 인(「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 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 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수급인을 말한다)이 고용하 는 근로자, 저소득근로자 및 장 기근속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 도록 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제 책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는 근로복지정책을 수립・시행하는 경우 제3조의 근로복지정 책의 기본원칙에 따라 예산・기금・세제・금융상의 지원을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이 이

노동자, 기간
제노동자(「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노동
자를 말한다), 단시간노동자
(「노동기준법」 제2조제1항제
9호에 따른 단시간노동자를 말
한다), 파견노동자(「파견노동
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
조제5호에 따른 파견노동자
<u>宁</u>
동자, 저소득노동자 및 장기근
<u>속노동자</u>
]4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u>노동복지정책</u>
<u>노동복지정</u>
<u>책</u>
-노동자

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무) ① 사업주(<u>근로자</u>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해당 사업장 <u>근</u>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고 <u>근로복지정책</u>에 협력하여야 한다.

② 노동조합 및 <u>근로자는 근로</u> 의욕 증진을 통하여 생산성 향 상에 노력하고 <u>근로복지정책</u>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누구든 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u>근로자</u>의 주거안정, 생활안정 및 재산형성 등 <u>근로복지</u>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한 자금을 그 목적사업에 만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u>근로복지사업</u>에 필요한 재원(財源)의 조성에 적극 노력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성한 재원

제5조(사업주 및 노동조합의 책 무) ① <u>노동자</u>
노동자
<u>노동복지정책</u>
②노동자는 노동
의욕
노동복지정책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노동자
 노동복지
제7조(재원의 조성 등) ①
<u>노동복지사업</u>
<u> </u>

은 <u>근로자</u>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87조에 따른 <u>근</u> 로복지진흥기금에 출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8조(<u>근로복지증진</u>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이 법에 따른 <u>근로</u> 복지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 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제1 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이 하 "고용정책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1. 제9조제1항에 따른 <u>근로복지</u> 증진에 관한 기본계획
- 2. <u>근로복지사업</u>에 드는 재원 조성에 관한 사항
- 3. 그 밖에 고용정책심의회 위 원장이 <u>근로복지정책</u>에 관하 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고용 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 관의 장과 협의하여 <u>근로복지</u> <u>증진</u>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u>노동자</u>
<u>}-</u>
동복지진흥기금
제8조(<u>노동복지증진</u> 에 관한 중요
사항 심의) <u>노동</u>
복지
<u>.</u>
1노동복지
<u> </u>
2. <u>노동복지사업</u>
3
<u>노동복지정책</u>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u>노동복지증</u>
<u>진</u>
②

1. <u>근로자</u> 의 주거안정에 관한	1. <u>노동자</u>
사항	
2.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관한	2. 노동자
사항	
3. <u>근로자</u> 의 재산형성에 관한	3. <u>노동자</u>
사항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u>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u> 에 관	5. <u>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u>
한 사항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근로자지원프로그램 운영에	7. 노동자지원프로그램
관한 사항	
8. <u>근로자</u> 를 위한 복지시설의	8. <u>노동자</u>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u>근로복지사업</u> 에 드는 재원	9. 노동복지사업
조성에 관한 사항	
10. (생 략)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근로복지증진을 위	11 <u>노동복지증진</u>
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	제10조(자료 제공 및 전산망 이
용)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9	용) ①
조에 따른 생활안정자금 지원	
및 제22조에 따른 신용보증 지	
	1 F H a)
원 등 이 법에 따른 <u>근로복지</u>	<u>노동복지</u>

<u>사업</u>을 수행하기 위하여 법원 <u>사업</u>-----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국 토교통부·국세청 등 국가기관 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관련 기관·단체에 다음 각 호의 자 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 우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단체는 정당한 사 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1.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세 신 고자용, 연말정산한 사업소득 자용, <u>근로소득자용</u>)
- 2. ~ 7. (생략)
- ② · ③ (생 략)

제11조(근로복지사업 추진 협의)
지방자치단체, 국가의 보조를
받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사
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고용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
역 안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예산으로만 근로복지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거
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생 🕏

1
<u>노동소득자용</u> -
2. ~ 7. (현행과 같음)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u>노동복지사업</u> 추진 협의)
<u>노동복지사</u>
<u>업</u>
<u>노동복지사업</u>
제12조(융자업무취급기관) ① (현

략)

- ② 고용노동부장관 및 지방자 치단체의 장은 <u>근로자</u>를 우대 하는 융자업무취급기관에 대하 여 이 법에 따른 융자업무의 취급 등을 우선하게 할 수 있 다.
- 제13조(세제 지원) 국가 또는 지 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주 거안정・생활안정・재산형성, 근로복지시설 및 근로복지진흥 기금의 설치・운영, 우리사주제 도 및 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의 활성화 등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조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제상의지원을 할 수 있다.
- 제14조(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 로복지정책을 효과적으로 수행 하기 위하여 근로복지종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근로복지종합정보시스템을 통 하여 근로자지원프로그램 및

행과 같음)
②
노동자
<u> </u>
제13조(세제 지원)
<u>\</u>
동복지시설 및 노동복지진흥기
금의 설치·운영, 우리사주제도
및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의 활
성화 등 노동자
· 제14조(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
운영) ①
<u>동복지정책</u>
<u>노동복지종합정보</u>
시스템
,
②
노동복지종합정보시스템
노동자지원프로그램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장 공공근로복지

제1절 근로자의 주거안정
제15조(근로자주택공급제도의 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의 주택취득 또는임차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주택사업자가 근로자에게 주택을우선하여 분양 또는임대(이하"공급"이라 한다)하도록 하는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주거기 본법」 제5조에 따른 주거종합 계획에 제1항에 따라 <u>근로자</u>에 게 공급하는 주택(이하 "<u>근로</u> <u>자주택</u>"이라 한다)의 공급계획 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③ <u>근로자주택</u>의 종류, 규모, 공급대상 <u>근로자</u>, 공급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 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16조(<u>근로자주택자금</u>의 융자)
① 국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

 제2장 공공노동복지
제1절 노동자의 주거안정
제15조(노동자주택공급제도의 운
영) ①
<u>노동자</u>
<u>노동자</u>
②
<u>노</u> 동자
<u> 소 </u>
<u>~ · · · · · · · · · · · · · · · · · · ·</u>

③ 노동자주택
<u>노동자</u>
제16조(<u>노동자주택자금</u> 의 융자)
①

택사업	자 또는	<u>근로자</u> 가	· 그 필
요한 기	자금(이하	" <u>근로</u> ス	- 주택자
<u>금</u> "이리	ㅏ 한다)을	을 융자범	받을 수
있도록	「주택	도시기금	<i>t</i> 법」에
따른 즉	주택도시기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 1. 주택사업자가 <u>근로자주택</u>을 건설하거나 구입하는 경우
- 2. <u>근로자</u>가 주택사업자로부터 근로자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② <u>근로자주택자금</u>의 융자대상 및 절차와 그 밖에 지원에 필 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 정 한다.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 ① 국가는 <u>근로자</u>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u>근로자</u>가 주택을 구입 또는 신축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그에 필요한 자금(이하 "주택구입자금등"이라 한다)을 융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입」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융자업무취급기관으로 하여금

<u>노동자</u>
<u>노동자주택자</u>
글
<u>.</u>
1노동자주택
2. <u>노동자</u>
<u>노동자주택</u>
② 노동자주택자금
제17조(주택구입자금등의 융자)
① <u>노동자</u>
<u>노동자</u>
②

주택구입자금등을 일반대출 이 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u>근로</u> <u>자</u>에게 융자하게 하고 그 이자 차액을 보전(補塡)할 수 있다.

③ (생 략)

제18조(<u>근로자</u>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국가는 취업 또는 근무 지 변경 등으로 이주하거나 가 족과 떨어져 생활하는 <u>근로자</u> 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절 <u>근로자</u>의 생활안정 및 재 산형성

-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국가는 <u>근로자</u>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u>근로자</u> 및 그 가족의 의료비·혼례비·장례비 등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 ② 국가는 경제상황 및 <u>근로자</u>의 생활안정자금이 필요한 시기 등을 고려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u>근로자</u>등의 생활안정을 위한 생계비의 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③ (생략)

<u>노동</u>
자
③ (현행과 같음)
제18조(<u>노동자</u> 의 이주 등에 대한
지원)
<u>노동자</u>
<u>.</u>
제2절 노동자의 생활안정 및 재
산형성
_ • •
제19조(생활안정자금의 지원) ①
<u>노동자</u>
<u>노동자</u>
②노동자
<u></u>
<u>노동자</u>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자금의 지원 등) ①	국
가는 <u>근로자</u> 및 그 자녀의	亚
육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장
학금의 지급 또는 학자금의	융
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
다.	

② (생략)

제21조(근로자우대저축) 국가는 근로자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근로자를 우대하는 저 축에 관한 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3절 <u>근로자</u> 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담보능력이 미약한 <u>근로자</u>(구직신청한 실업자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u>재해근로자</u>를 포함한다.이하 이 장에서 같다)가 금융회사 등에서 생활안정자금 및학자금 등의 융자를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해당 금융회사 등과의 계약에 따라 그 금전채무를 보증할

제20소(학자금의 지원 등) ①
노동자
<u> </u>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노동자우대저축)
<u>노동자</u>
노동자
<u> </u>
제3절 <u>노동자</u> 신용보증 지원
· = · -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제22조(신용보증 지원 및 대상) ①

수 있다. 이 경우 보증대상 융 자사업 및 보증대상 근로자는 -----노동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단과 금융 회사 등과의 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신용보증 대상 융자사업 및 근로자 노동자 3. 근로자 1명당 신용보증 지원 3. 노동자-----하도 4. ~ 6. (생략) 4. ~ 6. (현행과 같음) 7. -----노동자----7. 그 밖에 근로자 신용보증 지 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제23조(보증관계) ① 공단이 제22 제23조(보증관계) ① ------조에 따라 근로자에 대하여 신 -----노동자-----용보증을 하기로 결정하였을 때에는 그 뜻을 해당 근로자와 -----<u>노동자</u>------<u>노동자</u>-----그 근로자가 융자를 받으려는 금융회사 등에 통지하여야 한 다. ② 신용보증관계는 제1항에 따 른 통지를 받은 금융회사 등이 융자금을 해당 근로자에게 지 -----<u>노동자</u>-----급한 때에 성립한다. 제24조(보증료) 공단은 제22조에 제24조(보증료) ----- 따라 신용을 보증받은 <u>근로자</u>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의 1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보증료를 받을 수 있다.

제25조(통지의무) 제23조에 따라 통지받은 금융회사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단에 통지하여야 한다.

- 1. 2. (생략)
- 3. <u>근로자</u>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4. <u>근로자</u>가 기한의 이익을 상 실한 경우
- 5. (생략)

제27조(지연이자) 공단이 보증채 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해당 근로자로부터 그 지급한 대위 변제금에 대하여 연이율 100분 의 2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일부터 근로자 가 변제하는 날까지의 지연이 자(遲延利子)를 징수할 수 있 다. 이 경우 지연이자는 대위변

<u>노동자</u> -
제25조(통지의무)
1. • 2. (현행과 같음)
3. <u>노동자</u>
4. <u>노동자</u>
 5. (현행과 같음)
3. (연%과 실금) 제27조(지연이자)
·게2/그(기 단 기기)
노동자
<u></u>
노동자

제금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절 <u>근로복지시설</u> 등에 대한 지원

- 제28조(근로복지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는 <u>근로자</u>를 위한 복지시 설(이하 "<u>근로복지시설</u>"이라 한 다)의 설치·운영을 위하여 노 력하여야 한다.
 -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 <u>근로자</u>의 수 등을 고려하여 <u>근로복지시설</u>의 설치기준을 정하고 사업주에게 이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주(사업주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노동조합(지부·분회 등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근로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 는 지방자치단체·사업주·노 동조합·공단 또는 비영리법인

·
제4절 <u>노동복지시설</u> 등에 대한
지원
제28조(<u>노동복지시설</u> 설치 등의
지원) ①
노동자
 노동복지시설
· ②
<u>노동자</u>
<u>노동복지시설</u>
③
노동복지시설
4
<u>노동복지시설</u>

에 그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9조(<u>근로복지시설</u> 의 운영위탁)	제29조(<u>노동복지시설</u> 의 운영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①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한 <u>근</u>	<u>上</u>
<u>로복지시설</u> 을 효율적으로 운영	<u>동복지시설</u>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운영	
을 위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2
제1항에 따라 <u>근로복지시설</u> 의	<u>노동</u> 복지시설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	
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	
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30조(이용료 등) 근로복지시설	제30조(이용료 등) <u>노동복지시설</u> -
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u>근로</u>	노동자-
<u>자</u> 의 소득수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하여 <u>근로복지시설</u> 의 이용	노동복지시설
자를 제한하거나 이용료를 차	
등하여 받을 수 있다.	

-----노동복지시설---30조(이용료 등) 노동복지시설-·----<u>노동자</u>------노동복지시설-----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제31조(민간복지시설 이용비용의 지원) ① 국가는 제3조제3항에 지원) ① -----따른 <u>근로자</u>가 제28조제1항에 -----노동자-----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가 설치한 근로복지시설을 이 용하기가 곤란하여 민간이 운

영하는 복지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3장 기업근로복지

-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우리사주제도는 <u>근로자</u>로 하여금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주식회 사(이하 "우리사주제도 실시회 사"라 한다)의 주식을 취득· 보유하게 함으로써 <u>근로자</u>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 협력 증진을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
-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려는 주 식회사의 소속 <u>근로자</u>는 제34 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가진 <u>근로자</u> 2명 이상 의 동의를 받아 우리사주조합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설립 준비위원회는 우리사주조합의

② (현행과 같음)
제3장 기업노동복지
제32조(우리사주제도의 목적)
<u>노동자</u>
<u>노동자</u>
,
제33조(우리사주조합의 설립) ①
, r -l
<u>노동자</u>
1 - 도기
<u>노동자</u>
·

설립에 대한 회사의 지원에 관한 사항 등 고용노동부렁으로 정하는 사항을 미리 해당 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등) ①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의 우리사주조합에 조합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u>근로자</u>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소속 근로자
 - 2.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해당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 이상의 소유를 통하여지배하고 있는 주식회사(이하"지배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 또는 우리사주제도실시회사로부터 도급받아 직전 연도 연간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거래하는 주식회사(이하 "수급관계회사"라 한다)의 소속 근로자로서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근로자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u> </u>
노동자
1
<u>노동자</u>
2
<u>노동자</u>
<u>노동자</u>
<u>노동자</u>

- 가.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 관계회사의 경우에는 각각 소속 <u>근로자</u> 전원의 과반 수로부터 동의를 받을 것 나.·다.(생 략)
- ②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 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우리사주조합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37조에 따라 배정받은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여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 1. (생략)
- 2. 해당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지배관계회사, 수급관계회사의 소속 <u>근로자</u>로서 주주.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액주주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
노동자
나.•다. (현행과 같음)
② 노동자
<u>노동자</u>
1. (현행과 같음)
2
노동자

- 3.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 회사의 <u>근로자</u>가 해당 우리사 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한 후 소속 회사에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하게 되는 경우의 그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회사의 근로자
- 4. 그 밖에 <u>근로기간 및 근로관</u> 계의 특수성 등에 비추어 우 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인정하기 곤란한 <u>근로자</u>로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 ③ (생략)
- ④ 근로자의 소속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에 변동 이 생기면 제37조에 따라 배정 받은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의 주식과 제39조에 따라 부여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에 한정하 여 변경 전 우리사주제도 실시 회사의 우리사주조합의 우리사 주조합원 자격을 유지한다.
- 1. 2. (생략)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저

3 <u>노동자</u>
<u>노동자</u>
4노동기간 및 노동관 계
<u>노동자</u>
 ③ (현행과 같음)
④ <u>노동자</u>
 1.·2. (현행과 같음)
1.·2. (현영과 실름) 제36조(우리사주조합기금의 조성

및 사용) ① ~ ③ (생 략)

④ 우리사주조합은 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회사 또는 회 사의 주주가 제공한 재원으로 취득하게 된 우리사주를 해당 회사 소속 <u>근로자</u>인 우리사주 조합원에게 배정되도록 운영하 여야 한다.

⑤ (생략)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우리사주조합은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발생한 경우에 해산한다. 이 경우 우리사주조합의 청산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산 사유를 명시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1. ~ 3. (생략)
- 4.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 회사의 <u>근로자</u>가 해당 우리사 주제도 실시회사의 우리사주 조합에 가입하는 경우. 다만, 지배관계회사 또는 수급관계 회사 자체에 설립된 우리사주

및 사용) ① ~ ③ (현행과 같
승)
(4)
노동자
<u> </u>
<u>.</u>
⑤ (현행과 같음)
제47조(우리사주조합의 해산) ①
<u>.</u>
1. ~ 3. (현행과 같음)
4
노동자
<u> </u>

조합이 우리사주를 예탁하고 있거나, 우리사주조합원이 우 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간 동안은 해산하지 아 니한다.

5. (생략)

② (생략)

제49조(<u>근로자</u>의 회사인수 지원) 국가는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 하여 해당 회사의 <u>근로자</u>가 우 리사주조합을 통하여 해당 회 사를 인수할 경우 그 주식취득 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2절 <u>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u>의
제50조(<u>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u>의
목적) <u>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u>는
사업주로 하여금 사업 이익의
일부를 재원으로 <u>사내근로복지</u>
기금을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게 함으로써 <u>근로</u>
<u>자</u>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51조(<u>근로자</u>의 권익보호와 <u>근</u>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49조(<u>노동자</u> 의 회사인수 지원)
노동자
<u>.</u>
제2절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
제50조(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의
 목적) 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
사내노동복
<u>기기금</u>
<u>노동</u>
<u>자</u>
제51조(<u>노동자</u> 의 권익보호와 <u>노</u>
에 <u> </u>

로조건의 유지) 사용자는 이 법에 따른 <u>사내근로복지기금</u>의 설립 및 출연을 이유로 <u>근로관</u> <u>계</u> 당사자 간에 정하여진 <u>근로</u> <u>조건</u>을 낮출 수 없다.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u>사내</u> <u>근로복지기금</u>은 법인으로 한다. ② <u>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u>(이하 "기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 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 의 사업주가 기금법인설립준비 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라 한 다)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 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 관한 사무를 담 당하게 하여야 한다.

③ ~ ⑧ (생 략)

⑨ 준비위원회는 제7항에 따라 법인이 성립됨과 동시에 제55 조에 따라 최초로 구성된 <u>사내</u> 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복 지기금협의회"라 한다)로 본다.

⑩ (생 략)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제

<u> 동소건</u> 의 유지)
사내노동복지기금
노동관
<u>계노동</u>
조건
제52조(법인격 및 설립) ① <u>사내</u>
<u>노동복지기금</u>
② 사내노동복지기금법인
③ ~ ⑧ (현행과 같음)
9
사내
노동복지기금협의회
⑩ (현행과 같음)
제55조(복지기금협의회의 구성)

-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u>근로자</u>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같은 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2명 이 상 10명 이하로 한다.
- ② <u>근로자</u>를 대표하는 위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u>근로자</u>가 선출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생략)
- ④ 제2항과 제3항에도 불구하고 <u>「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u>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 사업의경우에는 그 노사협의회의 위원이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 ① 복지기금협의회는 다음 사 항을 협의·결정한다.
 - 1. <u>사내근로복지기금</u> 조성을 위한 출연금액의 결정
 - 2. ~ 4. (생 략)
 - 5. 사업 내의 다른 <u>근로복지제</u><u>도</u>와의 통합운영 여부 결정
 - 6. (생략)
 - ② (생 략)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기금법

①	<u> - 동자</u>
② <u>노동자</u>	
노동자	
	
③ (현행과 같음)	
4	
「노동자참여 및 협력	격증진에
 관한 법률」	
· 제56조(복지기금협의회의	기능)
1	
<u> </u>	
1. 사내노동복지기금	
1. <u>사네노 8 즉시기日</u>	
2. ~ 4. (현행과 같음)	
5	도보기계
	<u> </u>
<u>도</u> 6 (청해고 가으)	
6.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59조(이시 미 가시) ①	
제58조(이사 및 감사) ①	

인에 <u>근로자</u> 와 사용자를 대표	<u>노동자</u>
하는 같은 수의 각 3명 이내의	
이사와 각 1명의 감사를 둔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 ②	제60조(이사 등의 신분) ① · ②
(생 략)	(현행과 같음)
③ 복지기금협의회의 위원, 이	3
사 및 감사의 기금법인 업무수	
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하여는	
근로한 것으로 본다.	노동한
제61조(<u>사내근로복지기금</u> 의 조성)	제61조(<u>사내노동복지기금</u> 의 조성)
① 사업주는 직전 사업연도의	①
법인세 또는 소득세 차감 전	
순이익의 100분의 5를 기준으	
로 복지기금협의회가 협의・결	
정하는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사내근로복</u>	<u>사내노동복지기</u>
<u>지기금</u> 의 재원으로 출연할 수	<u> </u>
있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기금	제62조(기금법인의 사업) ①
법인은 그 수익금으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	
다.	
1. 주택구입자금등의 보조, 우	1

- 리사주 구입의 지원 등 <u>근로</u>
 <u>자</u> 재산형성을 위한 지원

 2. 장학금·재난구호금의 지급,
 그 밖에 <u>근로자</u>의 생활원조

 3.·4. (생 략)
- 5. <u>근로복지시설</u>로서 고용노동 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또는 같은 시설의 구입·설치 및 운영
- 6.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u>근로자</u> 및 해당 사업에의 <u>파견근로자</u>의 복리후생 증진
- 6의2. 제86조의2제1항에 따른 <u>공동근로복지기금</u> 지원
- 7.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u>근로자</u>에게 지급 할 의무가 있는 것 외에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② 기금법인은 제6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연받은 재산 및 복지기금협의회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이하 "기본재산"이라 한다)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을 제

노동자
0
2
<u>노동자</u>
0 4 / 키케 키 이)
3.•4. (현행과 같음)
5. <u>노동복지시설</u>
6
0
ュモコ
<u>노동자</u>
<u>파견노동자</u>
6의2
6의2
フレー ヒロココフ
<u>공동노동복지기금</u>
7
1.
ㄴ도기
<u>노동자</u>
①
<u> </u>

1항 각 호의 사업(이하 "<u>사내</u> 근로복지기금사업"이라 한다)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법인의 사업이 다음 각 호의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생략)

- 2. <u>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u>에 사용하는 금액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되는 금액 이상을 해당 사업으로부터 직접 도급받는 업체의 소속 <u>근로자</u> 및 해당 사업에의 <u>파견근로자</u>의 복리후생증진에 사용하는 경우
-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 1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업에 설립된 기금법인이 <u>사내근로</u> <u>복지기금사업</u>을 시행하는 경 우
- ③ 기금법인은 <u>근로자</u>의 생활 안정 및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 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대통

\/ _\
<u>내노동복지기금사업</u>
<u>.</u>
1. (현행과 같음)
2. <u>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u>
노동자
 파견노동자
<u> 724071</u>
n
3
<u>사내노동</u>
복지기금사업
_
③ <u>노동자</u>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는 근
<u>로자</u> 에게	필요한	자금을	기본
재산 중에	서 대부	할 수 있	있다.
63조(<u>사내</u>	근로복지]기금의	운용)
			_

- 제63조(<u>사내근로복지기금</u>의 운용) <u>사내근로복지기금</u>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한다.
 - 1. ~ 3. (생략)
 - 4. <u>사내근로복지기금</u>이 그 회사 주식을 출연받아 보유하게 된 경우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그 보유주식 수 에 따라 그 회사 주식의 유상 증자에 참여
 - 5. 그 밖에 <u>사내근로복지기금</u>의 운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제64조(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 ① <u>사내근로복지기금</u>의 회계연 도는 사업주의 회계연도에 따 른다. 다만, 정관으로 달리 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다.
 - ② (생략)
 - ③ 매 회계연도의 결산 결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손실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

<u>노동</u>
<u> 자</u>
제63조(<u>사내노동복지기금</u> 의 운용)
사내노동복지기금
1. ~ 3. (현행과 같음)
4. <u>사내노동복지기금</u>
5 <u>사내노동복지기금</u>
제64조(<u>사내노동복지기금</u> 의 회계) ① 사내노동복지기금
① <u>水네工중국시기日</u>
·
② (현행과 같음)
(3)
》 사내노동복지기금

도로 이월하며, 잉여금이 발생 한 경우에는 이월손실금을 보 전한 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사내노동복지기금-----전입한다. ④ 사내근로복지기금의 회계 ④ 사내노동복지기금----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 령으로 정한다. ______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 제66조(기금법인의 관리·운영사 항 공개) 기금법인은 제65조 항 공개) -----각 호의 서류 및 복지기금협의 회의 회의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며, 항상 근로자가 열람할 수 -----노동자-----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 자문서로 작성・보관하는 서류 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을 이 용하는 등 전자적 방법으로 공 개하고 열람하게 할 수 있다.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제68조(다른 복지와의 관계) ① -사용자는 기금법인의 설치를 이유로 기금법인 설치 당시에 운영하고 있는 근로복지제도 -----노동복지제도 또 또는 근로복지시설의 운영을 는 노동복지시설-----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기금법인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해산한다. 다만, 제4호의 경우기금법인이 그 존속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3. (생략)
 - 4. 해당 사업주의 제86조의2제1 항 또는 제86조의7제1항에 따 른 <u>공동근로복지기금</u>의 조성 참여 또는 중간 참여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처리) ① 사업의 폐지로 인하여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주가 해당 사업을 경영할 때에 근로자에게 미지급한임금, 퇴직금, 그 밖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품을 지급하는 데에 우선 사용하여야하며,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근로자의 생활안정자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 후 잔여

제70조(기금법인의 해산 사유)
· 1. ~ 3. (현행과 같음)
4
공동노동복지기금
제71조(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
처리) ①
, r -1
<u>노동자</u>
<u>노동자</u>
노동
<u> </u>
<u>,</u>
②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여 재산은 정관에서 지정한 자에 게 귀속한다. 다만, 정관에서 지정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87조에 따른 <u>근로복지진흥기</u> 금에 귀속한다.

③ 제70조제4호의 사유로 해산한 기금법인의 재산은 해당 사업주가 참여한 제86조의3에 따른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에 귀속한다.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생략)

- ② 기금법인이 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야 한다.
- 1. (생략)
- 2. 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u>근로자</u>에 대한 합병 후 지원수준
- 3. 4. (생략)
-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지원수 준은 합병 전 각 기금법인의

·	
노동복지진흥기금	
③	
공동노동복지기금법인	
<u>.</u>	
제72조(기금법인의 합병) ① (현	
행과 같음)	
②	
1. (현행과 같음)	
2	
<u>노동자</u>	
3. • 4. (현행과 같음)	
③	
<u>上</u>	

<u>근로자별</u>	평균	기市	금잔액,	합병
후 사업주	측의 출	출연(예정액	등을
고려하여	합병	후	3년을	초과
하지 아니]하는	범	위에서	합병
전 각 기	금법인]의	근로지	<u></u> 별로
달리 정할	· 수 있	J다.		

-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 저 병) ① · ② (생 략)
 - ③ 기금법인이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분할합병계약서를 작성하여 복지기금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 1. (생략)
 - 2. 분할합병 대상인 각 기금법인의 <u>근로자</u>에 대한 합병 후지원수준
 - 3. 4. (생략)
 - ④ 제2항제1호 및 제3항제1호에 따른 재산배분을 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배분하되, 분할 전 사업별사내근로복지기금 조성의 기여도 등을 고려하여 배분할 수 있다.
 - ⑤ (생략)

<u>동자별</u>
<u>노동자별로</u>
제75조(기금법인의 분할·분할합
병)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 </u>
<u>.</u>
1. (현행과 같음)
2
<u>노동자</u>
 3.·4. (현행과 같음)
(4)
노동자
- <u>사내노동복지기금</u>
<u>.</u>
⑤ (현행과 같음)

제78조(비밀유지 등) 복지기금협 의회의 위원, 이사 및 감사는 그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u>사내근로복지기금사업</u>과 관련하여 겸직 또는 자기거래 를 할 수 없다.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u>근로</u> <u>자지원프로그램</u> 등

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사업주는 <u>근로자</u>가 여러 가지
복지항목 중에서 자신의 선호
와 필요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
택하여 복지혜택을 받는 제도
(이하 "선택적 복지제도"라 한
다)를 설정하여 실시할 수 있
다.

② 사업주는 선택적 복지제도를 실시할 때에는 해당 사업 내의 모든 <u>근로자</u>가 공평하게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u>근로자</u>의 직 급, 근속연수, 부양가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수혜 수준을 달리할 수 있다.

제78조(비밀유지 등)
이네니트바퀴퀴크이시
<u>사내노동복지기금사업</u>
제3절 선택적 복지제도 및 <u>노동</u>
자지원프로그램 등
제81조(선택적 복지제도 실시) ①
<u>노동자</u>
- .
②
<u>노동자</u>
<u>노동자</u>
· <u>1.9 \</u>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제82조(선택적 복지제도의 설계
•운영 등) ① 사업주는 선택	· 순영 등) ①
적 복지제도를 설계하는 경우	
<u>근로자</u> 의 사망·장해·질병 등	노동자
에 관한 기본적 생활보장항목	
과 건전한 여가·문화·체육활	
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개인	
별 추가선택항목을 균형 있게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u>근로자</u> 가 선택적	②노동자
복지제도의 복지항목을 선택하	
고 사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전산관리서비스를 직접 제공하	
거나 제3자에게 위탁하여 제공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선택적 복지제도는 <u>사내근</u>	③사내노
<u>로복지기금사업</u> 을 하는 데 활	<u>동복지기금사업</u>
용할 수 있다.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83조(근로자지원프로그램) ①	제83조(노동자지원프로그램) ① -
사업주는 <u>근로자</u> 의 업무수행	<u>노동자</u>
또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 개인의 고충 등 업무	
저해요인의 해결을 지원하여	<u>子</u>

<u>근로자</u>를 보호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전문가 상담 등 일 련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u>근로</u> <u>자지원프로그램</u>을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와 <u>근로자지원프로그</u> 램 참여자는 제1항에 따른 조 치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u>근로자</u>의 비밀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익명성을 보장하 여야 한다.

제84조(성과 배분)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u>근로자</u>와 협의하여 정 한 해당 연도 이익 등의 경영 목표가 초과 달성된 경우 그 초과된 성과를 <u>근로자</u>에게 지 급하거나 <u>근로자</u>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5조(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 사업주는 해당 사업의 근 로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발명 또는 제안하거나 새로운 지식 ·정보·기술을 개발하여 해당 사업의 생산성·매출액 등의

<u>동자</u>
<u>노동자지</u>
원프로그램
<u>.</u>
②노동자지원프로그
램
노동자
<u> 고 6 시</u>
제84조(성과 배분)
<u>노동자</u>
<u>노동자</u>
<u>노동자</u>
제85조(발명ㆍ제안 등에 대한 보
상)노
<u>-</u> 동자
0 / 1
 _

증가에 이바지한 경우 이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체적인보상기준은 <u>「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u>에 따른 노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정한다.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선택적 복지제도, 근로 자지원프로그램, 성과 배분, 발명・제안 등에 대한 보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수 있다.

제4절 <u>공동근로복지기금</u> 제도
제86조의2(<u>공동근로복지기금</u>의
조성) ① 둘 이상의 사업주는
제6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시
행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이익
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u>공동근</u>
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이
라 한다)을 조성할 수 있다.

② (생략)

제86조의3(<u>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u>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u>공동근</u> 로복지기금법인(이하 "공동기

· 「노동자참여 및 협력
<u> 증진에 관한 법률」</u>
제86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의 지원)
노동
~~~ 자지원프로그램
<u> </u>
제4절 <u>공동노동복지기금</u> 제도
게이6 자이 9 (고도 도보기기그이
제86조의2( <u>공동노동복지기금</u> 의
조성) ①
조성) ①

금법인"이라 한다)을 설립하려는 사업주는 공동으로 각 사업주 또는 사업주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설립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설립에 관한 사무와 설립당시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에관한 사무를 담당하게 할 수있다.

제86조의4(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 회의 구성) ① 공동기금법인은 기금의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을 협의·결정하기 위하여 <u>공</u> 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이하 "공동기금협의회"라 한다)를 둔 다.

② 공동기금협의회는 각 기업 별 <u>근로자</u>와 사용자를 대표하 는 각 1인의 위원으로 구성한 다. 이 경우 <u>근로자</u>를 대표하는 위원은 제55조제2항을 준용하 여 선출하고, 사용자를 대표하 는 위원은 해당 사업의 대표자 또는 그 대표자가 위촉하는 사 람이 된다.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공동기금법인이 제62조제1항에

제86조의4( <u>공동노동복지기금협의</u>
<u>회</u> 의 구성) ①
<u>공동</u>
<u>노동복지기금협의회</u>
②
<u>노동자</u>
<u>노동자</u>
 제86조의5(공동기금제도의 촉진)
·····································

따른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 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86조의6(기본재산의 공동기금 | 저 사업에의 사용) ① 공동기금법 인은 제86조의2에 따라 출연받 은 재산 또는 공동기금협의회 에서 출연재산으로 편입할 것 을 의결한 재산(이하 이 조에 서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이라 한다)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기금법인의 기본재산 중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의 산 정에 관하여는 제62조제2항을 준용하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기금법인은 공동기금법인 의 기본재산을 사내근로복지기 금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정 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산정되는 금액을 높일 수 있다.

1. • 2. (생 략)

<u>노동복지진흥기금</u>
 ②
 1.·2. (현행과 같음)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 ② (생 략)

③ 제2항에 따라 재산을 배분 받은 사업주는 그 재산으로 <u>사</u> 내근로복지기금을 설치하거나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재원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 ④ (생략)

제86조의15(준용) 공동기금제도에 관하여는 제50조부터 제54조까 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 60조, 제62조(제2항은 제외한 다). 제63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74조, 제76조부터 제 78조까지, 제80조, 제93조를 준 용한다. 이 경우 제50조부터 제 52조까지, 제56조, 제63조, 제64 조 중 "사내근로복지기금"은 "공동기금"으로 보고, 제52조부 터 제54조까지, 제56조부터 제5 8조까지, 제60조, 제62조, 제64 조부터 제69조까지, 제73조, 제 74조, 제76조, 제77조, 제80조, 제93조 중 "기금법인"은 "공동 기금법인"으로 보며, 제54조,

제86조의8(공동기금법인의 탈퇴
및 재산처리)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u>
내노동복지기금
사내노동복지기금
④ (현행과 같음)
제86조의15(준용)
사내노동복지기
급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 조, 제62조, 제66조, 제68조, 제 78조 중 "복지기금협의회"는 "공동기금협의회"로 보고, 제62 조, 제78조 중 "<u>사내근로복지기</u> 금사업"은 "공동기금사업"으로 본다.

## 제4장 근로복지진흥기금

제87조(<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설치) 고용노동부장관은 <u>근로복지사</u> 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u>근로복지진흥기금</u>을 설 치한다.

제88조(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

- ① <u>근로복지진흥기금</u>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 1. · 2. (생략)
- 3. 다른 기금(제36조에 따른 우리사주조합기금 및 제52조에 따른 <u>사내근로복지기금</u>은 제외한다)으로부터의 전입금
- 4. ~ 6. (생략)
- 7. 제71조에 따라 기금법인 해산 시 정관으로 <u>근로복지진흥</u><u>기금</u>에 귀속하도록 정한 재산

사내노동복지기금
<u>사업</u>
제4장 노동복지진흥기금
제87조(노동복지진흥기금의 설치)
<u>노동복지사</u>
<u>업</u>
<u>노동복지진흥기금</u>
제88조(노동복지진흥기금의 조성)
① 노동복지진흥기금
<u> </u>
1.•2. (현행과 같음)
3
사내노동복지기금
4. ~ 6. (현행과 같음)
7
 노동복지진흥
<u>기금</u>

- 8. 9. (생략)
- 10.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 11. (생략)
- ② <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운용에 필요한 경우에는 <u>근로복지진흥</u> 기금의 부담으로 금융회사 또 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차입 할 수 있다.
- 제89조(<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회계 연도) <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회 계연도는 국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제90조(<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관리 ·운용) ① <u>근로복지진흥기금</u> 은 공단이 관리·운용한다.
  - ② 공단은 <u>근로복지진흥기금</u>을 운용할 때 공단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 ③ <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관리· 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 령령으로 정한다.
- 제91조(<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용도) <u>근로복지진흥기금</u>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8.•9. (현행과 같음)
10. 노동복지진흥기금
11. (현행과 같음)
② 노동복지진흥기금
노동복지진
흥기금
제89조( <u>노동복지진흥기금</u> 의 회계
연도) 노동복지진흥기금
제90조( <u>노동복지진흥기금</u> 의 관리
·운용) ① <u>노동복지진흥기금</u> -
②노동복지진흥기금
<b></b>
③ 노동복지진흥기금
제91조( <u>노동복지진흥기금</u> 의 용도)
노동복지진흥기금

- 근로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 등에 대한 융자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 3. <u>근로자</u> 또는 그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지급 및 학자금의 융자
- 4. 제14조에 따른 <u>근로복지종합</u> <u>정보시스템</u> 운영
- 5. 6. (생략)
- 7. <u>사내근로복지기금제도</u> 및 공 동기금제도 관련 지원
- 8. <u>근로복지시설</u> 설치·운영자 금 지원
- 9. <u>근로자</u> 정서함양을 위한 문 화·체육활동 지원
- 10. (생략)
- 11. <u>근로자지원프로그램</u> 관련 지원
- 12. 근로자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 13. <u>근로복지사업</u> 연구·개발에 필요한 경비
- 14. (생략)
- 15. <u>근로복지진흥기금</u>의 운용을 위한 수익사업에의 투자
- 16.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조성ㆍ

1. <u>노농자</u>
2. 노동자
3. <u>노동자</u>
4노동복지종합
정보시스템
5. • 6. (현행과 같음)
7. <u>사내노동복지기금제도</u>
8. <u>노동복지시설</u>
9. <u>노동자</u>
10. (현행과 같음)
11. 노동자지원프로그램
12. 노동자
13. 노동복지사업
 14. (현행과 같음)
 14. (현행과 같음) 15. 노동복지진흥기금

관리 · 운용에 필요한 경비 17. 그 밖에 <u>근로자</u>의 복지증진 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사업에 필요한 지원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제88조제1항제5호 및 제9호에 따른 자금은 근로복지진흥기금 중 다른 사업목적으로 조성・ 운용되는 자금과 각각 구분하 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 고 제91조제5호에 따른 사업비 를 위하여 공단은 고용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근로복지 진흥기금 내에서 구분하여 회 계처리하는 자금 간에 상호 전 용(轉用)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93조(지도・감독 등) ① 고용노 동부장관은 근로자 등의 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 금 그 장부・서류 또는 그 밖 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

으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

 17 <u>노동자</u>
제92조(회계처리의 구분 등) ① - 
<u>노동복지진흥기금</u> -
<u>노동복지진</u> 흥기금
 제93조(지도·감독 등) ① <u>노동자</u>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영 등에 시정 을 명할 수 있다.

- 1. 공단의 <u>근로복지진흥기금</u> 관 리 및 운용 실태에 관한 사항
- 2. 제29조제1항에 따라 <u>근로복</u> 지시설을 수탁·운영하는 비 영리단체의 업무·회계·재산 에 관한 사항

2의2. ~ 3. (생략)

② ~ ⑤ (생 략)

제94조(위임 및 위탁) ① (생략)

- ②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 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u>근로</u> <u>복지</u>와 관련된 기관 또는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 제95조의2(<u>특수형태근로종사자</u>등에 대한 특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u>근로복지사업</u>을 실시 할 수 있다.
  - 1. <u>근로자</u>가 아니면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

하여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여 해당 사업주 또는 노무수령자로부터 대가를 얻 는 사람

-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 2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사업주(<u>근로자</u>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제외한다)
- ② 제1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다음 각 호와같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할 수 있는 근로복지사업은 제4호의 근로복지사업으로 한정한다.
- 1. ~ 4. (생 략)
-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2조제1호에 도 불구하고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근로복지사 업을 실시할 때에는 그 사업의 근로자로 본다.

④ (생 략)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저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

2
<u>노동자</u>
②
노동복지사업
<u>노동복지사업</u>
노동복지사업
<u>— О І І І Д</u>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③
1. ~ 4. (현행과 같음) ③

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의 범	금에	처하디		

- 1. 2. (생략)
- 3. 제68조제1항(제86조의15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u>근로복지제도 또는</u> <u>근로복지시설</u>의 운영을 중단하거나, 이를 감축한 사용자

4. ~ 7. (생 략) 제99조(과태료) ① (생 략)

- ② 제6조를 위반하여 <u>근로복지</u>를 위하여 이 법에 따라 보조 또는 융자받은 자금을 목적 외 용도에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③ ~ ⑤ (생 략)

· 1.·2. (현행과 같음) 3
3,
노동복지제도 또
<u>는 노동복지시설</u>
_
4. ~ 7. (현행과 같음)
제99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노동복지
③ ~ ⑤ (현행과 같음)